

#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처방인센티브 시범사업팀

정부는 ‘국민건강보호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고자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는 의료기관이 과거 의약품 처방총액과 비교하여 제도 참여 후 절감된 총액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것으로, 시범사업은 실질적인 약품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및 창원시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대상 표시과목은 내과계열은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및 일반(미표시 포함)이며 외과계열은 외과 및 정형외과이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서 전산매체청구기관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된다.

시범사업대상기관은 자율적으로 처방 절감 노력을 하며, 그 결과 총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면 절감액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절감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약품비는 외래를 대상으로 하며 원내, 원외 처방약품비가 모두 포함된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인센티브 지급 모형에 의거하여 전년도 처방 약품비를 반기(6개월) 단위로 분석하여 내과계, 외과계별로 전국 의원의 약품비와 비교한 ‘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 지표(OPCI)’가 산출된다. 이 OPCI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률이 사전에 결정된다. OPCI가 1.0인 경우 30%를 기준으로, OPCI가 높으면 최소 20%, OPCI가 낮으면 최대 40%로 인센티브 지급률이 차등 적용된다<sup>1)</sup>. 또한 기관별 전년도 약품비를 바탕으로 환자 구성과 환자수를 보정하여 시범사업 기간의 기대약품비가 산출되며, 시범사업 기간동안의 실제 처방 약품비가 이보다 적으

1)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OPCI)는 기준 약품비 산출기간별로 각 요양기관이 발생시킨 환자구성(상병대분류 및 연령구분)을 보정하여 전국기준과 비교한 것으로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내과계열, 외과계열별로 산출한다. 시범사업 참여의원의 표시과목 중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미표시)를 내과계열로 하며, 외과, 정형외과는 외과계열로 한다. 고가도지표(OPCI)가 높을 수록 지급률을 적게 적용하고 낮을수록 지급률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약품비를 발생시킨 기관을 배려하고 고가도지표를 낮추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고가도지표가 1.20이면 전국적인 기준보다 20%의 비용이 더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그림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개념



면 절감액이 산출된다. 절감금액에 OPCI에 따라 결정된 인센티브 지급률을 곱하면 의료기관이 받는 인센티브 금액이 된다.

OPCI 및 인센티브 지급률, 기대약품비 및 실제 처방 약품비, 인센티브 금액은 전년도 동일 진료월을 대상으로 6개월 단위로 산출된다. 즉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기대약품비는 작년 동일기간동안의 처방약품비 총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며 인센티브 금액의 산출과 지급도 동일하게 반기 주기로 이루어진다.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 산출과 관련한 각종 산출지표와 약품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대상으로 한 OPCI 및 인센티브 지급률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또한 요양기관별 다빈도 10순위 상병별 비용정보, 요양기관별 다빈도 10순위 약효군별 비용정보 등도 제공된다.

약품비 절감이 처방의 비용·효과성이나 적정성을 도모하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처방 정보 또한 제공된다. 우리나라에서 과다사용 가능성이 높은 약품과 관련된 정보, 예를 들어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이나 주사제 처방률,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약품목수 등과 같은 정보들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제공된다. 이 외에도 처방 적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약제별 효과와 비용 정보 등도 제공된다.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실 약제처방인센티브시범사업팀 02-2182-2281~3, 2286~8)

## 자료

1.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시범사업 지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6.
2.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평가정보>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http://www.hira.or.kr/common/dummy_yoyang.jsp?pgmid=HIRAB030501050000#1) ([http://www.hira.or.kr/common/dummy\\_yoyang.jsp?pgmid=HIRAB030501050000#1](http://www.hira.or.kr/common/dummy_yoyang.jsp?pgmid=HIRAB030501050000#1))